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3. 11.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건 설 과]

제안 설명서

설 명 자: 건설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로법 시행령」에 조례로 위임한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공공조형물을 포함하고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공공조형물을 추가하기 위해 안 제2조에 제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 점용료 산정기준 명시를 위해 제3조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 본 조례안을 2023. 10. 4.부터 10. 24.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 2023. 11. 1.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공공조형물을 포함하고 점용료 산정기준 정비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00923160
----------	----------

제출년월일: 2023. 11. 3
제출자: 달서구청장
(건설과장)

1. 개정이유

- 「도로법 시행령」에 조례로 위임한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공공조형물을 포함하고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로점용허가 대상 추가(안 제2조제3호 신설)
- 나. 점용료의 산정기준 정비(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23. 10. 4. ~10. 24.)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비해당
 - 4)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원안 동의
 - 5)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원안 동의
 - 6)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법시행령」”을 “「도로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조형물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물로서 「<u>도로법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제1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u><신 설></u></p>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u>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생략)</p> <p>2. <u>제2조제2호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의 제11호 그 밖의 것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u></p>	<p>제2조(도로점용허가) ----- ----- 「<u>도로법 시행령</u>」-----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u>」 <u>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조형물</u></p>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영 제69조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u>제2조제2호 및 제3호</u>----- ----- -----.</p>

【 관 계 법 령 】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4., 2015. 8. 11., 2017. 12. 5., 2021. 1. 5.>

1. 전봇대·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8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 11. 1.>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11. 15.>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3.)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3.)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 11. 23.)
6.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선과 모양변경을 위한 수선 등을 말한다.